

대전지방법원 2016. 9. 27 선고 2016가단20204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6. 9. 6.

판결 선고2016. 9. 27.

## 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42,441,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2. 30.부터 2016. 1. 28.까지는 연 6%의, 2016. 1. 29.부터 2016. 2. 3.까지는 연 9%의, 2016. 2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76,950,000원에 관하여 2015. 10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46,480,7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 
나. 피고 B은 원고에게 46,480,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원고의 보험금 지급

1)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에스케이하이닉스새마을금고(이하 '소외 금고'라 한다)로부터 대출받은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소외 금고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 | 11,000,000원 | 2015. 5. 29.~2016. 5. 28. | 10,001,020원 |
| 2  | 23,650,000원 | 2015. 8. 19.~2016. 8. 18. | 21,502,070원 |
| 3  | 9,350,000원  | 2015. 9. 9.~2016. 9. 8.   | 8,522,999원  |
| 4  | 11,000,000원 | 2015. 10. 5.~2016. 10. 4. | 2,415,153원  |
| 합계 | 42,441,242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2) 원고와 피고 A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,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.

3) 소외 금고는 피고 A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5. 12. 29. 소외 금고에 위 가.항 기재 표 중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,441,242원을 지급하였다.

#### 나. 피고 B의 전세보증금 수령

1) 피고 B과 피고 A은 부부이다.

2) 피고 A은 2013. 10. 2. C와 청주시 서원구 D 지상 4층 단독주택 중 3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

135,000,000원, 존속기간 2013. 10. 3.부터 2015. 10. 2.까지로 정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2013. 10. 4.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.

3) C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전세금 중 미지급 차임 1,36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,640,000원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였다.

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1  | 2015. 4. 7.   | 20,000,000원 |      |         |
| 2  | 2015. 4. 8.   | 3,790,000원  |      |         |
| 3  | 2015. 7. 7.   | 4,900,000원  | 피고 B |         |
| 4  | 2015. 9. 10.  | 28,000,000원 | 피고 B |         |
| 5  | 2015. 10. 12. | 76,950,000원 | 피고 B | 이 사건 금원 |
| 합계 | 133,640,000원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. 12. 29. 소외 금고에 보험금 42,441,242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2,441,242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. 12. 30.부터 그로부터 30일 후인 2016. 1. 28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인 2016. 1. 2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. 2. 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### 가. 피고 B에 대한 증여 여부

1)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,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,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,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

참조).

2) 갑 제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B은 2015. 9. 21. E과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아파트를 271,000,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, 피고 B은 C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보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, 피고 B은 2015. 10. 12.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.

피고 B은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이 사건 금원은 원래부터 피고 B의 특유재산이었으므로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A인 점,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피고 B의 특유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, 피고 B은 C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, 피고 A은 2015. 9. 21.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 사실, 즉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.

#### **나.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**

1)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,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,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위 대여금을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위 증여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금원을 남편인 피고 B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, 채무자인 피고 A과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인정된다.

#### **다.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**

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

포함되는바,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2016. 9. 6. 기준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46,480,716원(= 42,441,242원 + 42,441,242원 × 0.06 × 30/365 + 42,441,242원 × 0.09 × 6/365 + 42,441,242원 × 0.15 × 216/365)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46,480,716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**라. 소결론**

따라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46,480,7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6,480,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**4. 결론**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허승**